

학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학전형규정

제 1 절 신입학

제2조(전형의 종류와 시기) ① 본교의 입학전형에는 특별전형, 일반전형, 외국인전형, TSMS전형 및 Expat전형이 있다. (개정 2011.9.19, 2011.11.28, 2013.9.30)

②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의 전형시기는 매학기 개강 전 6개월 내에 시행하되, 특별전형에 의한 신입생 선발을 마친 후 일반전형을 실시한다.

③ 입학전형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④ TSMS전형은 “TSMS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신입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1.11.28)

제3조(제출서류) ① 본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자는 입학요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8)

② (삭제 2020.3.1)

③ 박사과정 지원자의 경우 각 전공별 추가서류가 요구된다.

제4조(일반전형) ①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성경시험, 구술시험 및 인성검사로 구성된다.(개정 2013.9.30)

② 서류심사는 지원서, 개인신양간증문, 대학 및 대학원의 성적, 추천서 및 공인영어능력 시험 및 영작문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은 STTEP, TEPS, TOEFL 또는 TOEIC 점수로 평가한다. 시험 간 점수환산은 별도로 정한 환산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1.28., 2013.9.30., 2018.2.26.)

③ 신학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지원자는 성경시험에서 면제된다. (개정 2011.9.19,

2013.9.30)

- ④ 면접은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지식과 능력, 적성, 소명의식, 인격에 대하여 심사한다.
면접위원 중 한 사람이라도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의 점수를 주면 불합격 처리한다.

(개정 2011.11.28, 2013.9.30)

- ⑤ (삭제 2011.9.19)

- ⑥ 응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성경시험 또는 구술시험에 불응한 경우에는 입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한다. (개정 2013.9.30)

- ⑦ 인성검사 결과 목회자 및 기독교 사역자가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신설 2013.9.30)

- ⑧ 예배음악석사과정은 실기 오디션을 실시한다.(신설 2015.3.1)

제5조(특별전형 지원자격) ①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은 입학요강에 따른다. (개정 2011.9.19)

- ②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인성검사 및 면접으로 구성된다.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서 면접위원 중 한 사람이라도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의 점수를 주면 불합격 처리한다.
(개정 2013.9.30)

- ③ (삭제 2013.9.30)

- ④ (삭제 2013.9.30)

제5조의2(정원외입학) 정원외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구술시험 및 인성검사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성경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류심사만으로 전형할 수 있다.(신설 2013.9.30)

제6조(영어점수제한의 예외) 영어과정 입학예정자의 영어시험 점수 및 구술시험 점수에 따라 별도의 영어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8.2.26., 2020.3.1)

제7조(출제위원 및 심사위원) 총장은 입학전형의 출제위원 및 심사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3.9.30)

제8조(합격사정) 입학(편입학 포함)은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승인한다.(개정 2013.9.30)

제9조(합격자 발표) 본교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지원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9.30.)

제10조(신입생 등록) ① 합격자는 신입생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입학포기자로 간주된다. (개정 2013.9.30.)

② 입학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 입학사정위원회가 결정한 대기자 중에서 차점자 순으로 입학기회가 주어진다. (개정 2013.9.30.)

제 2 절 편·재입학, 전과, 학점인정

제11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으며, 편입생은 전적대학원에서 동일과정 또는 동일전공분야에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편입생은 본교 학위과정의 2학년(3학기)로 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목회학석사 과정으로 편입하는 경우 최대 3학기까지 인정받아 4학기로 편입할 수 있다. 편입생은 편입 후 최소 2학기 이상 본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편입생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9, 2013.9.30., 2014.5.1., 2018.8.20., 2019.1.1., 2020.3.1)

학위과정	편입학기	지원가능한 전적대학원 학위과정/전공	전적대학원 등록학기, 이수학점
목회학석사	3	목회학석사 과정 또는 본교일반신학석사과정	2학기 이상 등록, 25학점 이상 이수
	4	목회학석사 과정 또는 본교일반신학석사과정	3학기 이상 등록, 38학점 이상 이수
문학석사, 교육학석사, 일반신학석사	3	동일전공분야	2학기 이상 등록, 18학점 이상 이수

② 편입생은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 및 학점을 인정받는다. 편입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인정받은 학기 수에 따라 결정된다. (개정 2013.9.30)

제12조(재입학) 재입학생의 학기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8, 2013.9.30, 2015.3.1)

학위과정	학기인정 기준학점	비고
목회학석사	15	1. 재입학생의 학기인정은 올림하여 계산한다. 2. 재입학생의 인정학기는 재입학 이전의 등록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문학석사	11	
교육학석사	9	
일반신학석사	10	
예배음악석사	11	
신학석사	9	
철학박사	9	
	11 (기독교상담학)	

제13조(재입학의 절차) ①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재입학 기간에 재입학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은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개정 2013.9.30, 2014.6.30)

③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적 전의 학업성적 순으로 허가한다.

제14조(전과) ① 과정변경, 전공변경 또는 학위과정의 언어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문학석사과정, 목회학석사과정, 일반신학석사과정, 교육학석사과정, 예배음악석사과정, 신학석사과정 간에 한하여 입학 후 두 번째 학기부터 할 수 있으며, 오직 1회에 한하여 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목회학석사과정 영어과정에서 목회학석사 한국어과정으로 과정을 전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학 후 세 번째 학기부터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1.28, 2013.9.30, 2015.3.1)

② 전과 신청자는 매학기 전과 신청기간 내에 지도교수, 소속 학과장 (또는 프로그램 디렉터),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학과장(또는 프로그램 디렉터)의 허락을 받아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8)

③ 전과 신청은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학처장이 승인하며, 전과에 따른 학점인정은 본 규정 제16조를 따른다. (개정 2013.9.30)

④ 과정 또는 전공변경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11.11.28, 2013.9.30)

제15조(전적대학원의 학점인정) ① 본교 학위과정과 동일 계열의 정규대학원 학위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입학 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0.3.1)

② 학생은 개강 전 소정기일 내에 학점인정신청서와 전적대학원의 성적증명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③ 학점인정 신청자가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학과장 또는 프로그램 디렉터가 심사하고 교학처장이 승인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단, 해당학점은 총 평점평균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석사과정 입학생에 한하여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1.9.19, 2015.3.1, 2018.2.26.)

1. 석사과정 (개정 2011.9.19, 2015.3.1, 2018.2.26.)

학위과정	학점인정 기준	학점인정 제한
문학석사 예배음악석사	B-	15
교육학석사 일반신학석사	B-	12
목회학석사	B-	28
신학석사	A-	9

2. 박사과정 기독교상담학 전공 : 전적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신학관련 교과목 중 B- 이상의 학점을 받은 과목에 한하여 최대 20학점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8.2.26.)

④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석사과정은 2학기 이내, 박사과정은 1학기 이내 수업연한이 단축될 수 있으며, 재학연한은 신입생과 동일하다. (개정 2011.11.28, 2012.8.20., 2015.3.1., 2018.2.26.)

제16조(전과생의 학점인정) ① 전과생의 전과후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은 학과장 또는 프로그램 디렉터가 심사하고 교학처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3.9.30, 2014.6.30., 2015.3.1., 2016.10.1)

② 전과생이 전과 전후로 이수한 모든 학점은 총 평점평균에 산입된다. 단, 입학시

타교에서 학점인정 받은 학점은 총 평점평균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

- ③ 전과생의 재학연한 및 수업연한은 인정받은 학점을 학기로 환산하여 남은 기간을 산정한다. 학기 환산기준은 본규정 제12조 재입학생의 학기인정 기준학점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3.9.30., 2016.10.1.)

- ④ 교외사역실습(현장실습)이 필수요건인 경우, 남은 수업연한에서 한학기를 감해 이수해야하며, 남은 수업연한이 1학기인 전과생은 최소 1학기를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16.10.1)

제 3 장 교육과정

제 1 절 교육과정

제17조(교육과정) ① 각 학위과정별 교육과정은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② 교과목은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9.30., 2018.2.26.)

제18조(교과목의 학점단위) ①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의 학점단위는 3학점을 기본으로 하며, 커리큘럼에 따라 0~5학점으로 개설할 수 있다. 철학박사과정 신학전공의 경우 1 또는 0.5유닛으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 ②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에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실습과목은 1학기에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3.9.30., 2018.2.26.)

- ③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되 강의 콘텐츠는 1차시 당 진행시간 25분 이상, 총 학습시간 50분 이상을 1학점으로 한다. (신설 2020.3.1)

제19조(교과목의 신설·변경) ① 교과목을 신설할 때에는 학과장이 학과별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 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는다. (개정 2018.2.26.)

- ②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공과목을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다.

- ③ 교과목의 명칭, 이수학점, 교육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과장이 학과별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 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기 전에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논문지도과목) ① 학위논문을 쓰는 학생은 논문연구를 위하여 논문지도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논문지도과목의 담당교수는 지도교수로 하고, 이수여부는 합격 (P), 진행중 (IP) 또는 불합격 (NP)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3.9.30)

제21조(선수과목) ① 전공과목에 선수과목이 지정된 경우, 학생은 반드시 선수과목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해당 과목의 학과장과 교학처장이 승인할 경우 전공과목과 선수과목을 동시에 수강하거나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8.2.26.)

② (개정 2013.9.30., 삭제 2018.2.26.)

제21조의2(브릿지프로그램) 입학사정위원회는 학생이 학위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수강하여야 할 과목을 브릿지 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 입학할 수 있다. 학생은 입학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브릿지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하거나, 학위과정과 브릿지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다. (조신설 2013.9.30)

제 2 절 과목개설 및 강사 관리

제22조(강의계획서)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개강 4주 전까지 학교 학사행정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제23조(강사) ① 강사임용사유 발생 시 강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2.26.)

② (삭제 2018.2.26.)

③ (개정 2013.9.30., 삭제 2018.2.26.)

제23조의 2(교과목개설 최소수강인원) 학칙 제 18조의 제 2항에 따른 과정별 교과목개설 최소수강인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30, 2014.9.1., 2015.3.1., 2016.3.1.)

과 정	교과목개설 최소수강인원
M.Div.	5 명
M.A.	5 명
M.T.S.	5 명
M.Ed.	5 명
M.W.C.M	5 명
Th.M.	3 명
Ph.D.	3 명 단, 학과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교학처장의 승인을 통해 1명으로도 개설 가능
비고	필수교과목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음

제24조(강의료 지급) (삭제 2018.2.26.)

제 3 절 등 록 및 수 강 신 청

제25조(등록) ① 학생은 수업연한 기간 동안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고 학기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수업연한이 지난 후에는 학사규정 제26조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한다.

③ 입학 시 "브릿지프로그램"을 지정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한다.

1. 브릿지프로그램만 수강하는 경우 브릿지프로그램 해당과정의 등록금을 납부한다.
2. 학위과정과 브릿지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경우 학위과정의 등록금 전액과 초과학점에 대한 브릿지프로그램 해당과정의 초과학점 등록금을 납부한다. (신설 2013.9.30)

제26조(수업연한 이후 등록) ① 수업연한이 지난 학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한다. (개정 2013.9.30., 2015.3.1., 2018.2.26., 2018.8.20)

구 분	등록금
과목수강	- 학기당 수강 학점수에 따른 수업료 - 0학점으로 개설된 수업만을 수강할 경우, 수업시간을 학점으로 환산하여 등록금을 납부
성경·종합시험, 교내사역실습, 교외사역실습 미통과자	학적유지비

② (삭제 2018.8.20.)

③ 납부총액은 등록금 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의2(Expat 학생의 등록) ① EXPAT 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매학기 학점당 등록금과 학적유지비 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한다. (개정 2020.3.1)

② 0학점으로 개설된 수업만을 수강할 경우, 수업시간을 학점으로 환산하여 등록금을 납부한다.

③ Expat 학생의 납부총액은 수강신청 학점수에 따라 일반 학생 등록금 전액을 초과할 수 있다. (조신설 2013.9.30.)

제26조의3(연구등록) ① 수업연한을 경과한 재학생 또는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학위논문을 작성하려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등록시 연구등록금을 매학기 납부한다. (조신설 2018.2.26.)

제27조(수강신청 및 정정) ① 수강신청: 학생은 공지된 수강신청기간동안 본교 학사행정 시스템에서 수강할 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8.2.26.)

② 수강정정: 학생은 해당학기의 수강정정기간동안 본교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수강과목을 온라인 신청하거나, 교학처에 수강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수강과목을 정정할 수 있다. 수강신청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30., 2018.2.26.)

제28조(수강철회) ① 수강정정기간 이후 학생이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매학기 넷째 주에 수강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철회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8)

②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모듈라 수업을 제외한 다른 과목을 대신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13.9.30)

③ 수강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 성적증명서의 성적란에는 W(Withdrawal)로 기재된다.

제29조(재수강) ① 학업성적 등급 C⁺ 이하인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0.3.1)

② 필수과목에서 낙제한 경우 반드시 이를 재수강하여야 하며, 이전 성적은 GR(Grade Replaced, 성적대체)로 대체된다. (개정 2013.9.30, 2014.9.1)

③ (삭제 2011.11.28)

제30조(선수과목의 수강) (삭제 2013.9.30)

제30조의2(대체과목) ① 학위과정의 커리큘럼이 변경되는 경우 학생은 지정된 대체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②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은 해당 과목의 학과장 및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대체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조신설 2013.9.30. 개정 2016.3.1., 2017.2.1., 2018.2.26.)

제30조의3(교차수강의 제한) 한국어과정 학생이 영어과정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제한없이 수강신청이 가능하나, 영어과정 학생이 한국어과정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재학기간 중 3학점(목회학석사과정의 경우 5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신설 2018.2.26.)

제 4 절 시험과 성적평가

제31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 수시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성적제출) ①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성적을 학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 2013.12.31., 2018.2.26.)

②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력한 최종 성적평가표와 출석부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교학처 과장과 협의하여 학사업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8.2.26.)

③ 집중과정 (모듈라 수업)의 성적제출과 최종성적평가표 및 출석부 제출은 별도로 정해진 소정기간을 따른다. (신설 2013.9.30)

④ 단, 가을학기 졸업생 성적의 입력기간 및 최종 성적평가표와 출석부 제출기간은 졸업식의 일정에 따라 해당학기별로 정해진 소정기간을 따른다. (신설 2013.9.30)

⑤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학처장의 승인 하에 I(Incomplete)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I등급은 수업일수의 3/4 이상 출석이 인정된 경우로 제한하며, 석사과정의 집중과정(모듈라수업)과 가을학기 졸업예정자의 당해학기 이수과목의 성적등급은 'I'를 부여할 수 없다. 성적등급이 I(Incomplete)인 과목은 다음학기 개강 2주전까지 최종성적으

로 정정되어야 하며, 기한 내 성적이 정정되지 않을 경우 F(또는 NP)로 확정한다. (신설 2013.9.30, 개정 2013.12.31., 2016.10.1)

1. 가족의 사망
2. 교통사고, 입원을 수반한 심각한 질병
3. 영어 박사과정 수업
4. 기독교상담학과 상담실습 과목
5. 임신 (신설 2016.10.1.)

제33조(성적표시) 각 교과목의 성적은 등급으로 표시하고, 평균성적은 가중평균치법을 사용한 평점으로 표시한다.

제34조(평점평균의 산출) 학생의 학기별 평점평균은 각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제35조(성적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1.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학기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3. 기타 부당하게 취득한 성적

② 부정행위자 성적의 취소여부는 학생준수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5.8)

제36조(성적정정) ① 학생이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성적확인기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정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② 학생의 성적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교과목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소정기간 내에 학교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정정사유를 기록한 후 정정할 수 있다. 단, 필요시 교학처장이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1.11.28, 2013.9.30)

③ 성적정정은 한 과목당 1회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④ (삭제 2013.12.31)

제37조(군입대자 성적인정) ① 학기 1/2이상 경과한 이후 군에 입대하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별도의 과제를 부과하여 학기말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학기 1/2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학기는 자동으로 휴학처리된다.

제38조(학사경고) ①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8., 2015.3.1., 2018.2.26.)

구 분	학사경고
문학석사과정 목회학석사과정 일반신학석사과정 교육학석사과정 예배음악석사과정	해당학기 평점평균 2.0 미만 또는 두과목 이상 낙제한 경우
신학석사과정	해당학기 평점평균 2.5 미만 또는 한과목 이상 낙제한 경우
철학박사과정	해당학기 평점평균 3.0미만 또는 한과목 이상 낙제한 경우

낙제는 학칙 제22조에 따라 각 학위과정별 이수인정학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며, P/NP 과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총 평점평균이 졸업이수최저학점에 미달될 경우 학사경고와는 별도로 교학처장의 경고장을 받는다.

제39조(제적) ①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2회 받은 자 (목회학석사과정은 3회)는 제적된다. (개정 2011.11.28, 2013.9.30)

- ② 단,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해 제적되는 학생의 경우 총 1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제적을 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4.6.30)

- ③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전의 학사경고 횟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3.9.30)

제 4 장 학 적

제40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 제출시기 내에 휴학원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 ② 아래의 사유로 개인이 휴학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교학처가 직권휴학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사고나 질병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2. 해외 지역에서 선교 혹은 출장으로 거주 중인 경우

- ③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2년을 넘을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총 2년 이상 휴학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휴학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 하에 휴학할 수 있다.

1. 지속적인 통/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2. 군복무의 경우(현역 입영명령서 사본과 입대(복무)확인서)
3. 해외선교활동(파송장 등 증빙서류)
4. 본인 및 배우자의 해외출장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증빙서류) (신설 2013.9.30)
5. 임신/출산 및 육아 (병원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단, 육아 휴학은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부모 학생만 해당함 (신설 2014.6.30., 개정 2017.2.1)

④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이 입학 첫 학기에 위 ③ 항의 1, 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특별휴학청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 하에 휴학할 수 있다.
(신설 2013.9.30)

⑤ 위 ③ , ④항의 특별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3호와 4호에 해당하는 휴학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5호에 해당하는 휴학기간은 임신/출산은 1년을, 육아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9.30, 개정 2014.6.30., 2017.2.1)

제41조(휴학원 제출시기) 휴학원 제출시기는 매학기초 30일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40조 3항의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휴학청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 하에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4.6.30)

제42조(휴학기간의 연장) 제40조 3항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학기간의 연장을 필요로 하는 자는 복학 예정학기 휴학원 제출기간 내에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9.30., 2014.6.30., 2017.3.1.)

제43조(복학자 등록) 휴학 전에 등록금을 완납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예납으로 간주하며, 완납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등록금 미납분 및 인상분을 복학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자퇴) 자원 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이 학기 중 자퇴하는 경우, 해당학기의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한다. (개정 2013.9.30)

제45조(제적) 학생이 학칙 제32조에 의해 제적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46조(인적사항변경) 학생의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하여야 하며,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정정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한다. 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호적등본(법원인정 서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9.30)

제47조(증명발급) 제증명서류(재학, 수료, 졸업, 성적증명 등)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증명발급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교학처에 제출한다. 증명발급은 본인 및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능하고,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수령, 우편, Fax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9.30)

제48조(결석) ① 수업의 이수를 위한 최소 출석일수는 각 수업별 담당교수가 수업계획서에 명시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6.3.1., 2016.10.1., 2017.2.1)

② 다음 각 1호의 사유로 결석할 경우, 결석계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고 유고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출석으로 인정된다. (개정 2016.8.1., 2017.2.1., 2018.2.26.)

1.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의 사망 (최대 1주일) (개정 2016.8.1., 2018.2.26.)

2. 병역 소집 - 3일까지

3. 학생이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의 특별행사에 참석할 경우 - 교학처장이 허가하는 일수

4. 자연재해

5. 교통사고, 출산, 입원* 및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는 중병, 법정전염병

*출산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남학생은 배우자의 출산입원기간내에 연이은 날짜로 최대 5일까지 유고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개정 2012.8.20., 2015.12.01., 2016.8.1.)

③ (삭제 2013.9.30)

제 5 장 사역실습

제49조(사역실습의 정의) ① 본교는 학생들의 교회사역훈련을 위해 사역실습 제도를 운영

한다.

② 교내사역실습에는 채플 및 학교행사가 포함된다. (개정 2018.2.26.)

③ 교외사역실습에는 현장실습(Field Education)이 포함된다.

제50조(사역실습 이수) ① 문학석사, 일반신학석사, 예배음악석사과정 및 목회학석사과정의 학생들은 수업연한 동안 교내사역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Expat 학생의 경우 교내사역실습은 면제된다. (개정 2013.9.30., 2015.3.1., 2018.2.26.)

② 문학석사과정 기독교교육학 전공 학생들은 3학기, 교육학석사 학생들은 2학기의 교외사역실습(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수업연한이 교외사역실습 필수 이수학기보다 적을 경우, 수업연한 동안 교외사역실습을 한다. (개정 2013.9.30., 2015.3.1., 2017.2.1., 2018.2.26.)

제51조(교내사역실습) ① 채플은 학기 중 매주 지정된 요일에 있으며 학생의 경건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각 과정별로 지정된 채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6.)

② (삭제 2018.2.26.)

③ 학교행사는 학교가 주관 또는 인정하는 행사들을 포함한다. 단, 학교수련회를 학기내에 하는 경우, 학교수련회가 시행되는 요일에 수업이 있는 과목의 담당 교수는 수련회에 참석하여 수강학생들의 출석여부를 확인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8.2.26.)

④ 교내사역실습의 매학기 이수 기준은 출석률 75% 이상이다. 이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목실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과제를 제출하거나 교목실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7.3.1.)

제52조(교외사역실습) ① 교외사역실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모든 과정의 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회, 기독교단체/기관, 학교에서 교외사역실습(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1. 학생은 졸업요건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사역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목회자 또는 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2018.2.26.)

2. 현장실습의 학점은 P 또는 NP로 표기되며, 평점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8, 2013.9.30)

② (삭제 2013.9.30.)

제 6 장 외국어시험, 성경시험 및 종합시험

제53조(외국어시험) ① 목회학석사과정 학생은 전공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헬라어능력평가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헬라어능력평가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 헬라어능력평가시험은 본교 성서학연구센터에서 관할한다. (신설 2013.9.30)

제54조(성경시험 및 종합시험) ① 성경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회학석사과정과 일반신학석사과정 학생은 학위수여를 위해 성경시험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합격하여야 하며, 예배음악석사과정 학생은 성경시험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2013.9.30., 2015.07.01., 2015.11.2., 2019.1.1)

2. 성경시험 각 과목 중에서 목회학석사 과정 학생이 3회 이상, 일반신학석사과정 및 예배음악석사과정 학생이 2회 이상 응시하고도 불합격한 경우, 지정된 성경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 학생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과제 이행 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과목의 합격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0.3.1)

② (삭제 2013.9.30)

③ 문학석사과정, 교육학석사과정, 신학석사과정, 철학박사과정 학생은 학위수여를 위해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합시험은 각 과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철학박사과정에 한하여 각 과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3.9.30)

제55조(응시자격) 학위과정별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8., 2014.5.1., 2015.3.1., 2015.7.1., 2017.10.1.)

시험구분	학위과정	응시자격
성경시험	목회학석사과정	한 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0 이상
	일반신학석사과정	한 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예배음악석사과정	한 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종합시험	문학석사과정	한 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교육학석사과정	한 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신학석사과정	한 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철학박사과정	학과에서 정한 과목을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제56조(응시절차) 성경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학사 행정시스템에서 시험신청을 하고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박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

제56조의2(응시회수) (삭제 2020.3.1)

제57조(시험시기) 석사학위과정의 성경시험 및 종합시험은 학기당 1회 실시한다. 단, 석사 학위과정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졸업예정학기에 재시험을 1회 추가 실시할 수 있다. 박사 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연 3회 실시한다. (개정 2012.2.20., 2015.7.1., 2017.2.1., 2019.1.1.)

제58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별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목회학석사과정: 구약, 신약
2. 일반신학석사과정: 구약, 신약
3. 문학석사과정: 학과에서 정한 과목
4. 신학석사과정: 학과에서 정한 과목
5. 철학박사과정: 학과에서 정한 과목
6. 교육학석사과정: 학과에서 정한 과목 (신설 2011.11.28.)
7. 예배음악석사과정: 구약, 신약 (신설 2015.3.1.)

제59조(재시험) 시험 중 불합격된 과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목을 재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0)

제60조(시험문제출제) 시험과목에 관련된 해당학과 교수가 시험문제를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1조(시험출제절차) 시험문제는 시험 전에 교학처장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학위논문/연구보고서 제출 및 심사

제 1 절 학위청구논문 체제

제62조(논문의 구비사항) ① 학위 청구 논문(이하“논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8.2.26.)

1. 표지 (개정 2018.2.26.)
 2. 인준서
 3. 속표지 (개정 2018.2.26.)
 4. 제출서
 5. 목차
 6. 도표목차(필요할 경우)
 7. 본문
 8. 부록(필요할 경우)
 9. 초록
 10. 인용 및 참고문헌
 11. 영문 논문일 경우 국문 초록, 또는 국문 논문일 경우 영문 초록 (신설 2011.11.28, 개정 2013.9.30)
- ② 논문의 규격, 서식, 분량 등은 학위논문 인쇄 및 제출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9.30., 2017.2.1., 2018.2.26.)
- ③ 논문은 본인의 학위과정 언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9.30., 2018.2.26.)

제 2 절 학위청구논문 제출

제63조(논문제출자격)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2.26.)

1. 목회학석사과정을 제외한 석사과정 및 철학박사과정에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개정 2017.2.1., 2018.2.26.)
2. 성경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8.2.26.)
3. 논문제안서 심사와 논문 중간심사에 합격하고 소정의 논문 지도를 받은 자 (개정 2018.2.26.)

2018.2.26.)

4.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재학연한 이내에 학위논문 본 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자

② (삭제 2018.2.26.)

③ (삭제 2018.2.26.)

④ (삭제 2018.2.26.)

⑤ (신설 2011.11.28., 삭제 2018.2.26.)

제64조(논문제출절차)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작성, 제출하며 각 절차의 세부사항은 학위논문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0.1., 2017.2.1., 2018.2.26.)

1. 논문제목 제출 (개정 2018.2.26.)

2. 논문지도교수와 논문심사위원 선정 (개정 2018.2.26.)

3. 논문제안서 심사 (개정 2018.2.26.)

4. 논문 중간심사 (전공영역에 따라 생략 가능) (개정 2018.2.26.)

5. 논문 본심사 (개정 2017.2.1., 2018.2.26.)

6. (개정 2017.2.1., 삭제 2018.2.26.)

7. (개정 2017.2.1., 삭제 2018.2.26.)

8. 구술심사 - 박사과정 해당 (개정 2013.9.30., 2014.9.1., 2015.10.1., 2016.10.1., 2017.2.1., 2018.2.26.)

9. 논문 최종 수정 본심사 (개정 2017.2.1., 2018.2.26.)

10. 논문 인쇄본 하드카피 4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제출 (개정 2017.2.1., 2018.2.26.)

제65조(논문지도교수) 교학처장은 논문위원회 또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분야의 전임교원 중에서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한다. 단, 학문상 필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논문위원회 또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3.9.30., 2017.2.1., 2018.2.26., 2018.8.20)

제66조(논문접수의 부결) (조삭제)

제 3 절 학위청구논문 심사

제67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위촉)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되,

학과장이 추천한 자로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신학석사, 문학석사, 교육학석사 논문을 위해서는 3인, 일반신학석사 논문을 위해서는 4인, 박사논문을 위해서는 5인을 위촉한다. 단, 심사위원 중 1인에 한하여 교외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28)

제68조(논문심사위원장) 교학처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장은 논문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되, 의결에 있어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심사위원의 직무와 심사의 진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위논문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0.1., 2018.2.26.)

제69조(논문심사위원의 교체금지) 논문제안서 심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단,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6.10.1., 2017.2.1., 2018.2.26.)

제70조(논문심사) ①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은 제64조 논문제출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16.10.1., 2018.2.26.)

② 각 심사 단계에서 논문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그리고 연구 성과 등을 면밀히 심사한다. (개정 2018.2.26.)

③ (삭제 2013.9.30)

④ (삭제 2018.2.26.)

⑤ (삭제 2018.2.26.)

⑥ 논문 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심사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한다. (신설 2016.10.1., 개정 2016.10.1.)

제71조(심사위원의 정족수)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이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예외를 둔다. (개정 2018.2.26.)

1. 박사학위 논문제안서 심사와 중간심사는 부득이한 경우 재적위원의 5분의 3이상의 출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2.26.)

2. 박사학위 구술심사는 부득이한 경우 재적위원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단, 심사위원 1인에 한하여 다른 장소에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구술심사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26.)

제72조(논문심사 기간·기간연장) 논문심사를 열 수 있는 시기와 심사의 기간은 학위논문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9.30., 2017.2.1., 2018.2.26.)

제73조(논문심사의 판정) 각 논문심사위원은 본 규정 제70조② 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2인 이상,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4인 이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부여한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8.2.26.)

제74조(논문심사의 결과보고) 논문심사위원장은 각 논문 심사단계가 마친 후 일주일 이내에 각 심사위원의 심사표와 심사종합평정표를 교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8.2.26.)

제75조(논문성적의 기재) (삭제 2018.2.26.)

제76조(학위논문의 재심사) 각 논문 심사단계에서 “불합격”(NP) 판정을 받은 학생은 이미 제출한 제안서나 논문을 수정, 보완하거나 새로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6.10.1., 2017.2.1., 2017.5.8., 2018.2.26.)

① 매학기 종강일 기준 6주 이전에 심사결과가 확정된 경우, 종강일 기준 2주 이전까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6.)

② 재심사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설 2018.2.26.)

③ 각 논문 심사단계에서 표절 또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자동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표절 및 부정행위의 검증과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본교 학생준수규정과 부정행위자 징계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2.26.)

제77조(학위논문인쇄) 학위논문의 인쇄와 제출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인쇄 및 제출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8.2.26.)

제78조(학위논문 제출) (삭제 2018.2.26.)

제 4 절 연구보고서

제78조의2(연구보고서) 신학석사과정에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대신 연구보고서 2편을 제출하여 학위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의 작성, 지도, 심사 등의 사항은 연구보고서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0.1)

제 8 장 학위수여

제79조(학위수여의 확정) 교학위원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의 수여여부를 결정하고, 교학처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학위수여를 확정한다.

제80조(학위종별)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학생의 전공분야에 따라 학칙 제2장 5조에 명시된 것과 같다.

제81조(학위수여자격) 학칙에 있는 과정별 졸업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은 학위수여자격을 가진다. (개정 2013.9.30., 2014.9.1., 2018.2.26.)

제82조(학위수여 사정) 총장은 본교 교학위원회로 하여금 학위수여 자격을 사정하게 한다. 단, 특이사항이 있을시 대학원위원회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건을 사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1)

제83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위수여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학칙에 표시된 과정별, 전공별 명칭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84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 시기는 년 2회, 학기말로 한다. (개정 2011.11.28., 2017.10.1)

제85조(학위기 서식)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기 서식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15.3.1)

제86조(학위수여의 취소절차) 학위수여의 취소는 대학원위원회가 결의하여 총장이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학사규정

- ② (제54조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8-2019학년도 수료생은 응시회수에 관계없이 지정된 성경과제를 수행하여 성경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Yonsei University

BY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Name

HAS BEEN ADMITTED TO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Concentration)
CUM LAUDE

AND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HONORS
APPERTAINING THERETO.

WITNESS THE SEAL OF THE SCHOOL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AT SEOUL, KOREA
MONTH DD, YYYY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PRESIDENT

DEAN OF ACADEMIC PROGRAMS

Yonsei University

BY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Name

HAS BEEN ADMITTED TO THE DEGREE OF

Master of Divinity

CUM LAUDE

AND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HONORS
APPERTAINING THERETO.

WITNESS THE SEAL OF THE SCHOOL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AT SEOUL, KOREA
MONTH DD, YYYY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PRESIDENT

DEAN OF ACADEMIC PROGRAMS

Y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BY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Name

HAS BEEN ADMITTED TO THE DEGREE OF

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CUM LAUDE

AND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HONORS
APPERTAINING THERETO.

WITNESS THE SEAL OF THE SCHOOL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AT SEOUL, KOREA
MONTH DD, YYYY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PRESIDENT

DEAN OF ACADEMIC PROGRAMS

Y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BY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Name

HAS BEEN ADMITTED TO THE DEGREE OF

Master of Theology
(Concentration)
CUM LAUDE

AND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HONORS
APPERTAINING THERETO.

WITNESS THE SEAL OF THE SCHOOL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AT SEOUL, KOREA
MONTH DD, YYYY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PRESIDENT

DEAN OF ACADEMIC PROGRAMS

Yonsei University

BY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Name

HAS BEEN ADMITTED TO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Area)

CUM LAUDE

AND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HONORS
APPERTAINING THERETO.

WITNESS THE SEAL OF THE SCHOOL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AT SEOUL, KOREA
MONTH DD, YYYY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PRESIDENT

DEAN OF ACADEMIC PROGRAMS

Yonsei University

BY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Name

HAS BEEN ADMITTED TO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UM LAUDE

AND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HONORS
APPERTAINING THERETO.

WITNESS THE SEAL OF THE SCHOOL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AT SEOUL, KOREA
MONTH DD, YYYY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PRESIDENT

DEAN OF ACADEMIC PROGRAMS

Trinity Graduate University

BY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Name

HAS BEEN ADMITTED TO THE DEGREE OF

Master of Worship and Church Music

CUM LAUDE

AND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HONORS
APPERTAINING THERETO.

WITNESS THE SEAL OF THE SCHOOL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AT SEOUL, KOREA
MONTH DD, YYYY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PRESIDENT

DEAN OF ACADEMIC PROGRAMS

